

검 토 보 고 서

충청북도 긴급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
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

건설환경소방위원회
수석전문위원 김홍식

충청북도 긴급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1. 발의자 : 김호경 의원 등 8인

2. 발의 및 회부일자

가. 발의일자 : 2023년 2월 28일

나. 회부일자 : 2023년 3월 3일

3. 제안이유

- 화재발생 시 대부분의 인명피해가 직접적인 화상보다 유독가스에 포함된 일산화탄소 등의 흡입에 의해 의식을 잃어 대피하지 못하여 발생하며, 젖은 손수건 등을 통해 유독가스 흡입으로부터 코와 입을 보호한 채 대피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음.
- 이에 화재발생 시 유독가스로부터 누구나 손쉽게 호흡기를 보호하며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돕는 방연마스크의 비치를 권장할 수 있는 대상시설을 확대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- 가. 도지사가 긴급대피용 방연마스크의 비치를 권장할 수 있는 대상 시설을 확대함(안 제3조)
- (현행) 공공기관, 의료기관, 어린이집
 - (변경) 공공기관, 의료기관, 어린이집, 아동복지시설, 청소년복지 시설, 노인복지시설, 장애인복지시설, 다중이용시설

5. 검토내용

- 본 개정안은 충청북도 내에 위치한 공공기관 등에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 예방을 위한 방연마스크 비치 기관 및 시설을 확대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도민안전 확보 차원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 이에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됨.
- 기타 조문 내용은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, 조례안 예고('23. 3. 8.~'23. 3. 14.)를 통해 도민 의견을 수렴함.

6. 검토의견

- 「충청북도 긴급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을 검토한 결과, 공공기관 등에서 화재발생 시 유독가스로부터 누구나 손쉽게 호흡기를 보호하며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돕는 방연마스크의 비치를 권장할 수 있는 대상시설을 확대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.
- 다만, 방연마스크 비치는 의무사항이 아닌 권장사항으로 조례 시행의 실효성을 담보하기에는 한계점이 있으므로, 소관부서는 방연마스크 비치에 대한 홍보와 예산확보 등의 노력을 통해 공공기관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로부터 도민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행정이 요구됨.